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50 호 2016. 1. 14(목)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04호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1

훈 령

남해군훈령 제305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5

고 시

제2016 - 3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12

공 고

제2016 - 12호	남해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16
제2016 - 13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19
제2016 - 1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
제2016 - 20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26
제2016 - 24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27
제2016 - 33호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	28
제2016 - 3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31
제2016 - 37호	공유수면 신규등록 및 국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고	37

회 략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04호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1월 14일

남해군수

인

남해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남 해 군 공 보

(2) 제 550 호

2016년 1월 14일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 제조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도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항에 따른다.

8. 운반시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05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한다.

2016년 1월 14일

남해군수

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 중 “공간정보체계”를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간정보 사업의 중복성 여부

제15조제1항제1호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를 “기록·유지하고, 공간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제19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4조”를 “제13조”로, “제37조”를 “제4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지사”를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자체 및 관리부서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성한다” 를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자체 및 관리부서에 대한 보안감사 계획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를 “국가정보원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으로, “제26조 및 제28조제1항” 을 “제33조 및 제35조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 를 “법 제37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1조” 를 “법 제38조”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책” 을 “문책등 필요한 조치를” 로, “도지사” 를 “국가정보원장” 으로 한다.

제2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별표 1과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1조제1항 관련)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비 공 개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사 례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p><기타 공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사 례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緯經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3차원좌표(緯經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등급	분 류 기 준	
공개제한	사례	<p><수치지도(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간정보체계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그 밖의 관 : 그 밖의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p><그 밖의 공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자료
기준		<p>◦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의 공간정보로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 또는 제공되는 공간정보</p>
공개	사례	<p><항공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단, 국정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다. <p><위성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50cm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p><수치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유지 <p><기타 공간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이상 입체 영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이 아닌 공간정보

[별지 제 3호 서식] (제15조 제1항 관련)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승인서

요청자 신원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당성	
			검토자	
승인사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년 월 일

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 6호 서식] (제15조 제2항 관련) <신설>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_____)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 납 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 시 아래 법령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의 환수 및 사용금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7호 서식] (제15조 제1항 관련)<신설>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

요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 (단체)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보안대책				
검토자		제공여부	여	부
제공사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조건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직급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3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남 해 군 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동서통합지대 기본 구상에서 제시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고 동서화합의 선도적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과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하 "남해안 남중권"이라 한다)은 서로 협의하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협의회장 관할구역 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광역개발 및 해양자원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2. 동서화합과 2개 시·군 이상 연계사업 또는 도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4. 남해안 남중권 발전 관련 조사 연구 및 자료 수집

5. 화합과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해안 남중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회원의 자격) 협의회의 회원 자격은 남해안 남중권 현직 시장·군수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6조(임원의 구성)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2인을 둔다.

② 부회장은 시·군 소속(전라남도, 경상남도)별 각 1인을 둔다.

제7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임기 및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9조(회의) 협의회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단회의, 실무협의회로 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로 하되,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단회의 : 필요 안건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한다.

4. 실무협의회 : 안건 발생 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남해안 남중권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안건 관련 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시·군의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회의 회의에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회의장소) 회의 장소는 시·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현안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시 회원 상호간에 협의 결정한다.

② 임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규약 개정 및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2. 남해안 남중권 주요현안,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한 조정

3. 기타 임원단 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 협의

2. 협의회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협의

3. 기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인 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②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제4장 사무국

제15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두며,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공무원 파견 대상 시·군은 다음과 같다.

1. 협의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1인

2. 부회장 소속 시·군 공무원 각 1인

③ 사무국장과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동서통합지대 조성 및 남해안 남중권 연계·협력사업 총괄

2. 협의회 정기회의 등 회의 운영

3. 남해안 남중권 상생발전 포럼 등 민·관 협력 사업 추진

4. 남해안 남중권 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5.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6. 예산 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제17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협의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연회비
- 2. 특별회비, 기부금
- 3. 기타수입, 적립금이자

제19조(회비) ① 회비는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협회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20조(회계연도)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 세입·세출예산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협회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정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2조(사무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회 운영에 관한 사무일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제23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협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12호

남해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 군 수

(단위 : 명)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산정수	
계	40,186		6,028	4개 이상 읍·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0,806	402		
이동면	3,816	402		
상주면	1,567	236		
삼동면	3,710	402		
미조면	2,277	342		
남 면	3,519	402		
서 면	2,726	402		
고현면	3,564	402		
설천면	2,894	402		
창선면	5,307	402		

▣ 군의원

(단위 : 명)

지 역 선거구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20/100 산정수	
가선거구	계	13,532		2,707	각 읍·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해읍	10,806	109		
	서 면	2,726	28		
나선거구	계	6,458		1292	각 면별로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고현면	3,564	36		
	설천면	2,894	29		
다선거구	계	8,902		1,781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이동면	3,816	90		
	상주면	1,567	90		
	남 면	3,519	90		
라선거구	계	11,294		2,259	1개 이상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삼동면	3,710	113		
	미조면	2,277	113		
	창선면	5,307	113		

남해군 공고 제2016 - 13호

남해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남해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비고
계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외국인		
40,257	40,174	66	17	5,751	청구권자 총수의 1/7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16 - 16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6일

남 해 군 수

1. 목적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및 암석 붕괴·낙하 등으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시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의 우려가 있어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고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 1. 6 ~ 1. 26(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6. 1. 6 ~ 1. 26(20일간)

4. 공고방법 :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예고대상)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남해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60-3727)

- 다. 제출기한 : 2016년 1월 26일
- 라. 보내실 곳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마. 문 의 처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 055)860-3294
-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지 정 사 유
		유형	등급	면적(m ²)	
고현 탑동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일원	붕괴위험	D	304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삼동 봉화	삼동면 봉화리 산366-4번지 일원	붕괴위험	D	5,85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미조 미조3	미조면 미조리 산128-1번지 일원	붕괴위험	E	13,715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낙석방지책 등 급경사지 보수·보강 및 정비계획 수립
- ※ 사업 시기는 예산(국·도비)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9.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 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총괄과 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각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붙임1]

탐동지구 전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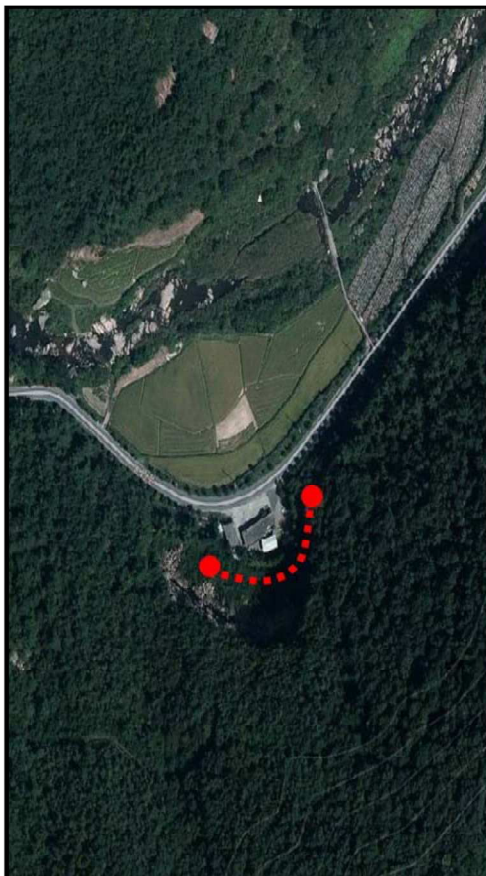
탐동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일원)



아성아저너리

관향노

봉화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366-4번지 일원)



위성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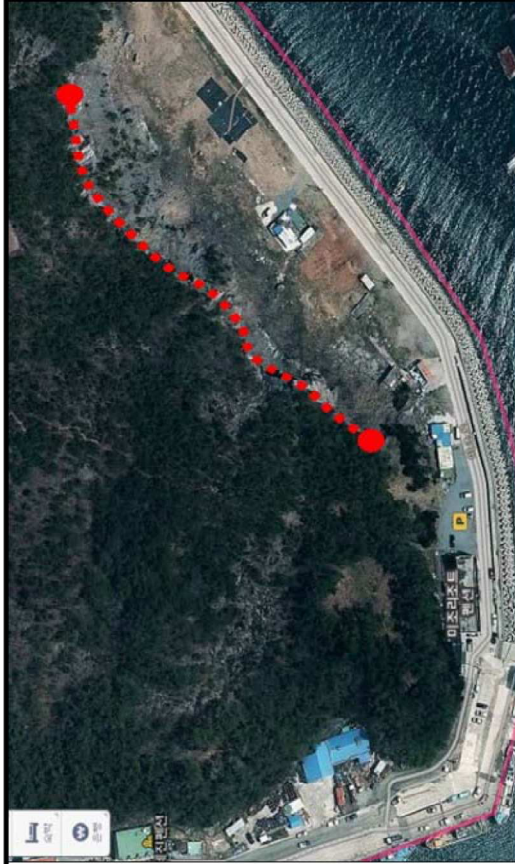


현황도

봉화지구 전체 위치도



미조3지구 위치 및 현황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산128-1번지 일원)



미조3지구 위치도



현황도

미조3지구 전체 위치도



[붙임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용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 고시 행정예고		
2.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연락처: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하

- | | |
|--------|---|
| 비
고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남해군 공고 제2016 - 20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 「남해군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연서 주민수)에 따라 2015. 12. 31. 현재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하기 위한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월 7일

남 해 군 수

19세 이상 주민 총수(단위 : 명)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 (단위 : 명)	비고
계	주민등록 자	재외국민	외국인 (영주권 취득후 3년경과자)		
40,252	40,174	66	12	806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남해군 공고 제2016 - 24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남 해 군 수

○ 양식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441호	패류양식 (살포식)	설천 문항	50,000	2016. 1. 7. ~2026. 1. 6.	사천시 용강길 ***	이○희	대체발
남해양식 제442호	패류양식 (살포식)	설천 문항	50,000	2016. 1. 7. ~2026. 1. 6.	사천시 안숲피길 ***	송○희	대체발

○ 어업권 지분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포기(지분)사항				포기면적 (m ²)
						당초		변경		
						면적 (m ²)	소유자	면적 (m ²)	소유자	
남해양식 제377호	패류양식 (살포식)	피조개	창선 진동	198,000	2012. 8. 6. 2022. 8. 5.	198,000	이○희, 송○희, 박○숙	66,000	박○숙	132,000

* 총 면허면적 중 송선희 지분(66,000m²), 이경희 지분(66,000m²) 포기

남해군 공고 제2016 - 33호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3-2-3-(9)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2-13에 따라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첨부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우리군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공고문 첨부 또는 우리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4)에 비치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1. 공람기간 : 2016년 1월 14일 ~ 2016년 1월 28일(14일간)
2. 공람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3.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안) 도서 :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2016년 1월 14일 ~ 2016년 1월 28일(도시건축과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안)

<표 1> 폭우 도시 종합재해취약 지역

등급	재해 취약정도	위치	면적 (km ²)	구성비 (%)	집계구 (개소)
I 등급	매우취약	-	-	-	-
II 등급	취약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93.958	26.3	33
III 등급	보통	-	167.001	46.7	35
IV 등급	양호	-	96.762	27.0	13
계	-	-	357.721	100.0	81

<표 2> 가뭄 도시 종합재해취약 지역

등급	재해 취약정도	위치	면적 (km ²)	구성비 (%)	집계구 (개소)
I 등급	매우취약	남해읍	0.015	0.0	1
II 등급	취약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설천면, 창선면	46.156	12.9	24
III 등급	보통	-	243.154	68.0	46
IV 등급	양호	-	68.396	19.1	10
계	-	-	357.721	100.0	81

<표 3> 강풍 도시 종합재해취약 지역

등급	재해 취약정도	위치	면적 (km ²)	구성비 (%)	집계구 (개소)
I 등급	매우취약	남면	4.626	1.3	1
II 등급	취약	삼동면, 미조면, 남면, 서면, 창선면	74.069	20.7	11
III 등급	보통	-	223.441	62.5	40
IV 등급	양호	-	55.585	15.5	29
계	-	-	357.721	100.0	81

<표 4> 해수면상승 도시 종합재해취약 지역

등급	재해 취약정도	위치	면적 (km ²)	구성비 (%)	집계구 (개소)
I 등급	매우취약	남해읍, 삼동면	1.117	0.9	2
II 등급	취약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60.359	46.2	22
III 등급	보통	-	53.323	40.8	22
IV 등급	양호	-	15.816	12.1	5
계	-	-	130.615	100.0	51

● 남해군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등급조정(안)

- 등급조정 기준 : 집계구 면적대비 각종 위험지구 면적이 50% 이상인 집계구
- ⇒ 등급조정 대상 없음

의 견 서

건 명	남해군 도시기후변화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등급조정 “안” 공람공고	접수번호	
		접 수 일	2016. .

의 견	
-----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3-2-3-(9)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5-2-13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한 남해군 도시기후변화 종합 재해취약성 분석 등급조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 - 34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 재공람·공고**

남해군 공고 제2015-379호(2015.5.8)와 관련하여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람·공고 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의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5항 및 「남해군 계획 조례」 제8조에 따라 재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14일

남 해 군 수

-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
-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 2) 규 모
 - 용도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 당초 입안 A=24,780㎡ → 금회 변경 A=23,560㎡
(농업진흥지역 해제 불가에 따른 학교 구역 외 잔여지 제척)
 - 학교 : A=23,560㎡, 도로 : B=10m, L=8m
 - 나. 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붙임1>
 -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4. 관련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4)
5. 의견 제출 방법
 -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학교,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21,246.7	-	579,421,246.7	100.0		
육지부합계		357,609,682.7	-	357,609,682.7	61.7		
도시지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		
	주거지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	
	상업지역	소계	183,713.0	-	183,713.0	-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4	
	관리지역	소계	132,902,347.7	증)23,560	132,925,907.7	22.9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4,169,121.0	-	44,169,121.0	7.6	
		생산관리지역	52,359,975.0	-	52,359,975.0	9.0	
		계획관리지역	36,373,251.7	증)23,560	36,396,811.7	6.3	
	농림지역		157,563,335.0	감)23,560	157,539,775.0	27.2	
	자연환경보전지역		55,342,717.0	-	55,342,717.0	9.6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3		

※ 기정은 남해군 고시 제2014-77호(2014.10.17)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금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당초입안	금회변경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농림 지역	계획 관리 지역	24,780	23,560	100%	·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 학교를 조성하여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금회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 리지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함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8	519	-	-	-	-	-	-	1	8	519
중로	1	8	519	-	-	-	-	-	-	1	8	519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A	10	집산 도로	8	소로 2-128	학교 구역계	일반 도로	-	-	

다)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1-A	· 노선신설 - L=8m, B=10m	· 농촌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금회 조성되는 학교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도로를 신설 결정코자 함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꽃내 중학교	중학교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	증)23,560	23,560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꽃내 중학교	· 군계획시설(학교) 신설 - 위치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105번지 일원 - 면적 : A=23,560㎡	· 학생수 감소 및 시설 노후화로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현대화된 시설과 기숙사를 갖춘 중학교를 조성하여 교육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신설 결정코자 함

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신설	4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계획관리지역

남해군 공고 제2016 - 37호

공유수면 신규등록 및 국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해양 미등록토지를 신규등록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표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6개월 후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월 11일

남 해 군 수

○ 미등록토지 현황

연 번	토지소재	지 번	지 목	면 적 (m ²)	소유자	비 고
계		6필지		1,642	국	
1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724-3	대	91	국	
2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51	잡종지	100	국	
3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52	잡종지	484	국	
4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53	잡종지	475	국	
5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54	임야	142	국	
6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68-55	잡종지	350	국	

※ 토지조서 및 측량성과도는 남해군청 해양수산과(055-860-3375)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